

- 라) 휴직기간(총2년)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
- ▶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, 요양기간,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
  - ▶ 다만, 복직 후의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 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(총무처 인기 12107-45, 1996.1.25.)
- 3) 휴직의 횟수 :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1년 이내,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(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,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) 할 수 있음. 단, 당해 교육공무원의 질병 정도와 요양기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, 직권면직 조치하여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(총무처 인제 200-1489, 1972.8.5.)

#### 마. 휴직신청서류

- 1) 휴직신청서 : 소속, 직, 성명, 휴직사유, 휴직기간 등을 명시(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경우에는 제출받을 필요는 없으나,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)
- 2) 휴직사유 입증서류
  - 가) 의사의 진단서 :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(「의료법」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)로서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병·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
  - 나)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「의료법」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의사 소견서 등)

#### 바. 복직절차

- 1)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,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(복직원 제출)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자체 없이 복직을 명함.
- 2)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.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
- 3) 질병휴직 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(진단서 등)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함

#### 사.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

- 1) 일반 질병휴직
  - 일반 병가(60일) → 법정연가사용 가능 → 일반 질병휴직